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에 앞서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7.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건명: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고용보험법 제44조, 제 47조,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8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104조, 105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불입참조(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16. (14일간)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전희선 수사관(02-2004-70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주소										
				사전통지 제목	예정 처분 사유	예정 처분 내용												
1	이*정	1998.12.15.	처분사전통지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 대상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2026. 3. 7.자로 서울 종로구 소재 '트마리'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나, 제7차 실업인정일(2026. 3. 16.)에 상기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10일분 합계 641,920원을 부정수급함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처분 - 총 반환액: 2,054,140원 (④=①+②+③) (단위: 원)	폐문부재	서울 종로구 창덕궁4길 40 (이하 생략)										
						<table border="1"> <thead> <tr> <th>실업 인정일</th> <th>부정 수급액 (①)</th> <th>추가 장수액 (②)</th> <th>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③)</th> <th>총 반환 명령액 (④)</th> </tr> </thead> <tbody> <tr> <td>2026. 3. 16.</td> <td>641,920</td> <td>0</td> <td>1,142,220</td> <td>2,054,140</td> </tr> </tbody> </table>			실업 인정일	부정 수급액 (①)	추가 장수액 (②)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③)	총 반환 명령액 (④)	2026. 3. 16.	641,920	0	1,142,220	2,054,140
						실업 인정일			부정 수급액 (①)	추가 장수액 (②)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③)	총 반환 명령액 (④)						
2026. 3. 16.	641,920	0	1,142,220	2,054,140														